



제31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

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17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조 공 선

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경과

-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 내용 :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- 돌봄, 숙제지도, 문화·예·스포츠 등 프로그램, 등·하원 지원 등

나. 위탁시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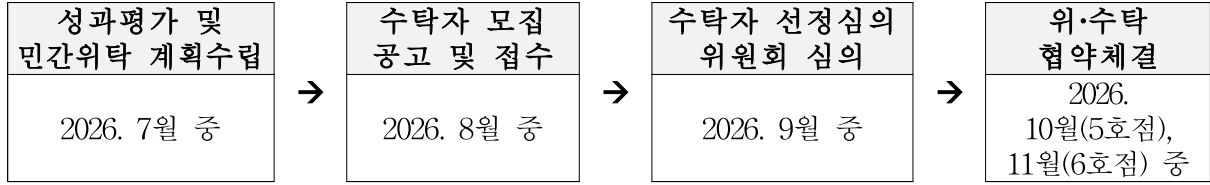
연번	구분	위치	면적(㎡)	정원	現 수탁기관
1	재위탁 (5호점)	순화궁로 458-58 (별내동, 별가람마을 1-8단지)	87.78	20	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(대표 김현아)
2	재위탁 (6호점)	별내3로 64-16 (별내동, 별내별빛마을 3-6단지)	83.23	20	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(대표 한동윤)

다. 민간위탁 기간

연번	구분	설치일	위탁기간	
			기존	재위탁 시
1	5호점	2021.11.01.	2021.11.01. ~ 2026.10.31.(5년)	2026.11.01. ~ 2031.10.31.(5년)
2	6호점	2021.12.01.	2021.12.01. ~ 2026.11.30.(5년)	2026.12.01. ~ 2031.11.30.(5년)

라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선정 방식 :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
- 추진 절차

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위탁경비 : 약 150,037천원 (1개소/년)

산출근거		합계(천원)	비고
계		150,037	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(기본급) 센터장 : 3,34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전일제) : 3,10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시간제) : 1,551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호봉제) 개인별 호봉 적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초과분 ·(명절수당) 개인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× 60% × 2회 ※ 월급여,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, 퇴직적립금 포함 	약 123,597	기본인건비 + 추가인건비 (호봉적용) + 명절수당
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(1,530천원 × 12개월) + (500천원 × 2개월) ※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수용비, 수수료, 여비 등 	19,360	냉난방비 포함
돌봄 프로그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0천원 × 12개월 	2,400	
급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4,500원 × 20명(아동 정원수) × 52일(방학일수) ※ (지원기준) 중식 1식 단가 9,000원의 50% 보조 	4,680	*방학일수(안) 겨울방학 : 35일 여름방학 : 17일

바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종사자 채용, 돌봄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돌봄 센터 시설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○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돌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

구 분	검 토 의 견
	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○ 외부강사 및 외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교육비 절감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돌봄프로그램 운영·관리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 대상 시설 ○ 성과지표의 객관화 및 정당화로 자체평가 용이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(지도·감독) 및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 점검),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,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
총 합 의 견	○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 ○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가능 ○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고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

사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성과평가
 - 근거 :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(성과평가)
 - 대상 :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2개소(5호점, 6호점)
 - 아동권리보장원 평가 결과 세부 점수 비공개로 7월 중 자체평가 예정
 ※ 아동권리보장원(보건복지부) 평가 결과 ‘통과’(60점 이상 득점)

아. 기대효과

-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
-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강화 및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

자. 향후계획

- 2026. 7. : 다함께돌봄센터 5, 6호점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
- 2026. 8. :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서류 접수
- 2026. 9. :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
- 2026. 10. :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인수인계 및 위·수탁협약 체결
- 2026. 11. :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인수인계 및 위·수탁협약 체결

4. 참고사항

가. 참고자료 : 붙임

나. 관련부서 : 여성아동과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, 이에 대한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- 검토 결과,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, 업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 다만, 위탁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,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절차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「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」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(안)

대항목	소항목	평가 항목	배점
가. 수탁자의 적격성	A. 공신력 (10)	1. 법인 형태와 이사회 구성	5
		① 신청법인의 유형 ② 법인(단체) 이사회 구성 인력의 전문성	· 사회복지법인(2) · 기타 비영리법인(1) ·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이 20% 이상(3) ·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이 10% 이상(2) ·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이 5% 미만(1)
	B. 사업 수행 기관 재정 능력 (10)	2. 최근 3년간 법인(단체)에 대한 지도·감독 사항 * 신규법인(단체) 미해당	·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해당없음(5) ·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해당있음(3)
		3. 수탁사무운영을 위한 수탁기간(5년) 동안의 재정 지원계획	· 자부담 2,500만원 이상(5) · 자부담 1,000만원 이상(4) · 자부담 1,000만원 미만(3)
	C. 사업 능력 (10)	4. 법인(단체)의 자산보유 현황	· 5천 이상------(5) · 2천 이상~5천 미만------(4) · 1천 이상~2천 미만------(3) · 1천 미만------(2)
		5.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업운영 실적 * 신규법인(단체) 미해당	· 4회 이상 수행------(5) · 2회 이상 수행------(4) · 1회 이하 수행------(3)
		6. 최근 3년간 아동복지 관련 표창 또는 공모사업 수상실적 * 신규법인(단체) 미해당	· 4회 이상 수행------(5) · 2회 이상 수행------(4) · 1회 이하 수행------(3)
정량평가 합계 (6개 항목)			30
나.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	D. 전문성 및 운영 의지 (20)	7.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(내정자)의 적합성	10
		①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견해 ② 시설 및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도	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
	E. 시설 운영 계획 (30)	8.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(내정자)의 운영의지	10
		① 대표자 및 시설장(내정자)의 운영의지, 가치관, 성실성 등 ② 시설장(내정자)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	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
		9. 향후 시설 운영계획 수준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	30
		① 지역 수요에 대한 욕구조사 및 결과 반영 여부 ② 비전과 목표, 중점추진과제의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 여부 ③ 성과목표의 적정성, 도달 가능성 및 용이성 ④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의 타당성, 창의성 실행 가능성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⑥ 프로그램 운영의 균형 수준	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 우수(4~5), 보통(2~3), 미흡(0~1)
다. 지역 사회 활성화	F. 지역 사회 연계 (20)	10.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	20
		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계획의 구체성, 타당성, 이행가능성, 탁월 정도 ② 지역공동체 참여, 협력 여부 및 지역사회 인적·물적 자원 활용계획 구체성, 타당성, 이행가능성, 탁월 정도	우수(8~10), 보통(5~7), 미흡(0~4) 우수(8~10), 보통(5~7), 미흡(0~4)
감점 사항		PPT 발표시간 미준수 시 적용 (PPT 발표시간 : 5분 이내) - ① 총 발표시간(5분) 준수 - ② 총 발표시간(5분) 후 3분 초과 시 감점 1점 - ③ 총 발표시간(5분) 후 5분 초과 시 감점 3점	① 감점없음(5분 이내) ② - 1점 (5분 초과 ~ 8분 이내) ③ - 3점 (8분 초과)
정성평가 합계 (4개 항목)			70
전체 합계 (10개 항목)			100

※ 심사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
 ※ 평균 점수 중 고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 ※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1) 시설장의 전문성 및 책임성 2) 수탁자의 적격성 등 3) 지역사회 활성화방안

붙임2 관련 법령 등

○ 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7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

- ① 시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우선 근거하고, 그 밖의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○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1. 위탁기간의 변경
 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 3.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